

『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(대통령 훈령)」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,
-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·근절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(안 제2조)
-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의 제정·시행(2019. 8. 6.)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최근 적극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,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의 창의적·능동적 업무 처리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.
-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극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공직자들의 실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행정의 가치와 인식 변화,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,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시정전반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.